

#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 심사 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8월 25일, 평창군수 제출
- 나. 회부일자 : 2025년 9월 4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30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2025년 9월 4일 상정, 9월 5일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회계과장 손영미)

####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2025년도 평창군 군유재산 취득 및 처분 2차 계획은
  - 토지 취득: 2건, 5필지, 124,260m<sup>2</sup>, 27,912,855천원
  - 건물 취득: 3건, 16동, 2,701.45m<sup>2</sup>, 13,446,000천원
  - 토지 처분: 1건, 5필지, 1,959m<sup>2</sup>, 633,629천원
- 토지 취득 : 2건 5필지 124,260m<sup>2</sup> 27,912,855천원
  - 1. 대관령면 군유지 집단화사업: 4필지 122,407m<sup>2</sup>, 27,280,000천원
  - 2. 군유 일반재산(토지) 교환: 1필지 1,853m<sup>2</sup>, 632,855천원

- 건물 취득 : 3건 16동  $2,701.45\text{m}^2$ , 13,446,000천 원
  - 1.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 10동  $414.1\text{m}^2$ , 1,946,000천 원
  - 2. 대관령면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차고지 신축: 2동  $560\text{m}^2$ , 1,500,000천 원
  - 3.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 4동  $1,727.35\text{m}^2$ , 10,000,000천 원
- 토지 처분 : 1건 5필지  $1,959\text{m}^2$ , 633,629천 원
  - 1. 군유 일반재산(토지) 교환: 5필지  $1,959\text{m}^2$ , 633,629천 원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정유진)

-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기준은
  - 1건당 취득하는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 또는  $1,000\text{m}^2$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이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르면 취득에는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등이 해당됩니다.
  - 1건당 처분하는 기준가격은 10억 원 이상 또는  $2,000\text{m}^2$  이상의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이며
-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변경계획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기준
  -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입니다.
- 제출된 변경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은

토지 취득 : 2건, 5필지, 124,260m<sup>2</sup>, 27,912,855천 원

건물 취득: 3건, 16동, 2,701.45m<sup>2</sup>, 13,446,000천 원

토지 처분: 1건, 5필지, 1,959m<sup>2</sup>, 633,629천 원이며

- 변경 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는 총 6건으로 442,852m<sup>2</sup>, 30,007,703천 원

건물은 총 10건으로 6,310.54m<sup>2</sup>, 30,847,465천 원

기타(지장물 등)은 총 1건으로 132,335천 원이 되겠습니다.

□ 사업내용을 보면

1. 먼저 『대관령면 군유지 집단화사업 토지매입』입니다.

- 본 사업은 향후 우리군의 중·장기 공공사업 추진에 필요한 핵심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재산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 인근에 위치한 강원개발공사 소유의 대관령면 횡계리 344번지 외 3필지 122,407m<sup>2</sup>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27,280백만원을 투입하여 2025년 10월부터 2030년 1월 까지 5년간 분납 매입할 계획이며 2025년 제2차 자체 지방재정 투자 심사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sup>1)</sup>을 받았습니다.

- 매입 예정지는 영동고속도로 대관령IC와 인접하여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대관령 시가지 뿐만 아니라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 평창올림픽플라자,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 알펜시아리조트 등 주요 기반시설과 인접하여 향후 대규모 스포츠·관광·문화 복합 시설이나 전국·

1) 2025년 제2차 자체 지방재정 투자심사 심의시 조건부 승인됨. (2025.08.2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국제 규모 행사 시 입지 경쟁력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sup>2)</sup>」 제3조<sup>3)</sup>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의 기본방향으로 개발·활용 중심의 적극적 운용과 장래 행정수요 계획적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 강화를 명시하고 있고 제4조<sup>4)</sup>에서는 취득시 고려사항으로 장래 필요한 공공용지 확보와 공유재산 집단화를 통한 효율적 관리를 규정하고 있어 본 사업은 장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균유지를 집단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등 법령상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대상 부지는 규모와 위치가 개발 잠재력이 높으므로 기후변화 대응과 스포츠·관광 수요 확대 등에 따른 공공사업 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토지 보상비 절감과 민간 개발선점 방지, 예산 집행 효율화가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재산 가치의 상승도 기대되며, 기획예산과에서 실시한 “대관령면 개발가능 예정지 기본구상 용역” 결과, 대상부지가 전지훈련 특화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도출되어 있어 활용방안이 불명확한 토지 매입이라는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대상 부지가 연접하지 않고 단절되어 효율적 활용에 제약이

2)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22호, 2025. 3. 14. 시행

3) 제3조(기본방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 업무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여 "개발·활용" 중점의 적극적 운용으로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여야 한다.
2. 주민복지 수요 증가 등 장래 행정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4) 제4조(취득시 고려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용 또는 공공용지 및 도시개발 예정지 등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필요한 경우
2.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하여 공유재산 집단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경우

있으므로 주변 사유지 추가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매입을 추진하는 만큼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단기·중기 활용계획을 구체화하여 매입 즉시 실행가능하도록 준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대관령면 개발가능 예정지 기본구상 용역 개요

- 용역명 : 대관령면 개발가능 예정지 기본구상 용역
- 용역기간 : 2024.10.21. ~ 2025.05.30
- 용역비 : 26,400천원
- 용역사 : (주)와우엔지니어링
- 용역내용 : 개발여건 분석, 개발가용지 분석 및 대상지 작성,  
부지활용 기본구상 수립
- 용역결과 : 3가지 활용방안을 제시함.  
(대규모 관광리조트 유치, 전지훈련 특화 클러스터 조성,  
올림픽 복합 스포츠 파크)  
⇒전지훈련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방안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결론.

## 2. 『군유 일반재산 토지교환』 건입니다.

- 본 건은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주식회사 중앙알앤디 소유의 대관령 횡계리 279-70번지 중 1,853㎡와 인근 군유지 횡계리 279-114번지 외 4필지 중 1,959㎡를 교환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 공동주택 신축 개요

- 사업주체 : 주식회사 중앙알앤디
- 사업위치 : 대관령면 횡계리 279-70번지 외 5필지
- 대지면적 : 10,321m<sup>2</sup>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규모 : 아파트 3동 지하 2층 지상 29층
- 세대수 : 210세대
- 건폐율/용적률 : 12.94% / 226.97%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제1항<sup>5)</sup>에서는 일반재산과 사유재산간의 교환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sup>6)</sup>에서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맞게 교환하도록 일반재산의 교환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기준<sup>7)</sup>에서는 그 기준에 맞는 재산은 토지

5) 제39조(교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여 교환을 요청한 경우
4.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6) 제44조(교환) ① 법 제39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

7) 제18조(교환)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 법 제39조 및 영 제11조의2제1항,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교환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

를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 재산과 처분 재산이 토지로서 유사한 재산으로 판단되고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제2항<sup>8)</sup>에서 규정한 가격 기준에도 부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처분 재산 중 횡계리 279-20번지(도로)는 당초 1979.01.30. 군 계획시설(횡계 소로 2-10호)로 결정되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sup>9)</sup> 경과조치에 따라 2000년 7월 1일부터 20년이 경과하였으며 2020.06.30.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으나 사업시행기간 경과로 2025.08.04. 최종 실효 고시되어 교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횡계리 279-117번지에 위치한 군계획시설(소공원)의 진입로 확보에 대한 주민 요구가 존재하므로 향후 주민 이용 편의를 저해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도시과)의 의견대로 교환재산의 일부면적 제척 또는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공유재산과의 교환 시에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1. 토지를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전, 답, 구거, 도로, 잡종지 등의 지목을 망라하여 유사한 재산으로 봄)
- 8) 제44조(교환) ②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해서는 아니 된다.
- 9) 제16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매수청구 및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부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
  2.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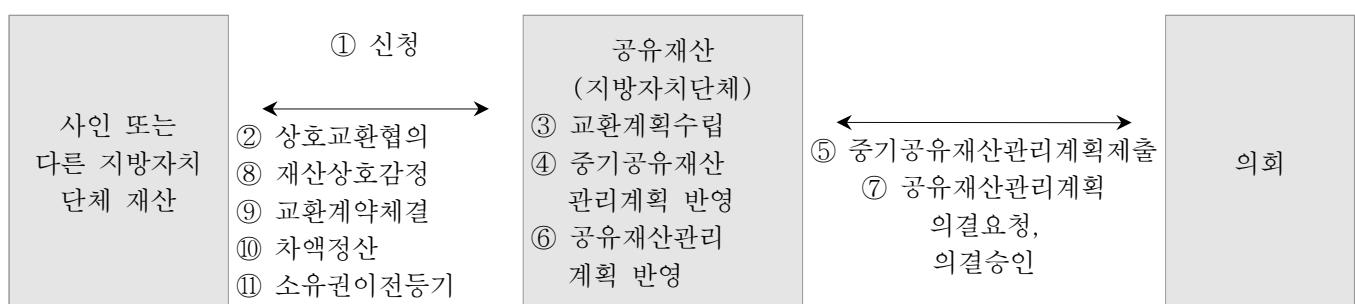
## 군계획시설(도로)결정 실효 지형도면

○ 횡계 소로 2-10



- 처분대상 토지(군유지)의 형태와 위치, 경사도를 고려할 때 활용 가치가 낮은 군유지를 처분하고 효용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사유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군유 재산의 효용성 제고와 토지 활용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취득 토지에 대한 활용 계획을 구체화하고, 민간 개발과 공공 편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관리한다면 지역의 생활 인프라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공유재산과 사유재산간의 교환 절차



※ 행정안전부 2024공유재산업무편람 p219

### 3.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 변경』 건입니다.

- 본 건은 제262회 정례회(2020.12.21.)에서 평창읍 여만리 13-1번지 외 6필지 129,124m<sup>2</sup> 토지 및 지장물 취득 건과 평창읍 상리 산 1번지 외 1필지 1,290,428m<sup>2</sup>와 대화면 하안미리 산387-1번지 외 1필지 3,008,867m<sup>2</sup>에 대한 국공유림 교환 건에 대하여 승인 받았고,
  - 제280회 임시회(2022.11.08.)에서 해당 부지에 산림문화센터 1동과 숙박동 6동 연면적 964.25m<sup>2</sup>의 건물 신축을 승인 받았으며
  - 금회에 부족한 객실 수를 추가하기 위하여 19억원의 사업비로 숲속의 집 10동 연면적 414.1m<sup>2</sup>의 건물 신축으로 변경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제출)현황

구 분	제262회 정례회(' 20.12)	제280회 임시회(' 22.11)	제306회 임시회(' 25.9)
안 건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취득내용	<input type="radio"/> 토지 - 평창읍 여만리 13-1 외 6필지 129,124m <sup>2</sup> 617,724천원 <input type="radio"/> 국공유림 토지교환 - 평창읍 상리 산1 외 1필지 1,290,428m <sup>2</sup> 1,881,185천원 <input type="radio"/> 지장물 - 1건 40,000천원	<input type="radio"/> 건물 - 7동 964.25m <sup>2</sup> 3,637,000천원	<input type="radio"/> 건물 - 10동 414.1m <sup>2</sup> 1,946,000천원
총사업비	8,000백만원	8,400백만원	12,604백만원

- 당초 승인받은 건물 기준가격과 총사업비 모두 30% 이상 증액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대상<sup>10)</sup>에 해당하며, 숲속의 집 10동 신축

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 부족한 객실을 보완하여 숙박 수용능력 확충과 수익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체류형 관광기반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운영 시 투자 규모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과 인근 관광시설과의 연계 마케팅 전략, 계절별 운영 프로그램 개발, 지속가능한 시설 관리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마련한다면 고부가가치의 대표 관광거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4. 『대관령면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차고지 신축』 건입니다.

- 본 사업은 대관령면 용산리 1-106번지(군유지, 창고용지)에 건물 2동 (연면적 560㎡, 지상 1층, 1,500백만원)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대관령면 환경미화원 대기시설의 협소와 재활용 선별장의 사유지 임시 사용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2025년도 본예산에 900백만원을 편성 하였으나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600백만원을 2회 추경에 증액 반영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 대상부지는 대관령 농기계임대사업소 잔여부지를 분할하여 활용하는 군유지로, 현재 실시설계용역과 계약심사가 마무리되었으며 위치와 접근성 측면에서 업무 효율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차고지 및 대기실, 재활용 선별장 조성은 환경미화원의 업무처리와

---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휴식 등을 위한 거점 공간이므로 시설 협소와 노후로 인한 업무 비 효율을 해소하고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필수 기반 시설로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초기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사업비 산정과 계획 검토를 통해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과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5.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 변경』 건입니다.

- 본 사업은 2023년 3월 제28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반영되어 용평면 용전리 71-2번지 외 3필지 11,140㎡와 부지 내 학교 등 건물 2동 1,028.07㎡에 대한 취득계획이 승인되었고 금회 건축물 4동 신축(연면적 1,727.35㎡, 10,000백만원)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제출)현황

구 분	제283회 임시회(' 23.3)	제306회 임시회(' 25.9)
안 건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취득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토지<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용평면 용전리 71-2 외 3필지 11,140㎡ 1,950,720천원</li></ul></li><li>○ 건물(기존)<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동 1,028.07㎡ 1,200,000천원</li></ul></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건물<ul style="list-style-type: none"><li>- 4동 1,727.35㎡ 10,000,000천원</li></ul></li></ul>
총사업비	12,600백만원	16,020백만원

- 총사업비가 당초 126억원에서 160억 2천만원으로 27.1% 증액되어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sup>11)</sup>은 아니며 현재 학교시설의 리모델링 및 진입로 공사가 완료되었고 신축 건물은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되어 2026년 말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 제출된 계획안의 특이사항은 없으며, 귀농·귀촌 창업 지원을 통해 도시민의 귀농에 대한 관심과 지역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의 조기 준공을 위한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고 향후 운영단계에서도 건물이 유 휴화되지 않고 지속가능하도록 효과적인 운영 전략을 면밀하게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 6.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1부.

---

11)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총괄표)

(단위:  $m^2$ , 천원)

# 2025년도 제2차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 목록

(단위 : m<sup>2</sup>,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예정가격	취득 처분 시기	취득처분 사유	비 고 (소유자)
	지목	소재지	수량				
<b>토지 취득 합계 [2건, 5필지]</b>			<b>124,260</b>	<b>27,912,855</b>			
<b>소계 1건, 4필지</b>			<b>122,407</b>	<b>27,280,000</b>			
1	전	대관령면 횡계리 344	95,956	20,700,000	2030	대관령면 군유지 집단화사업	강원 개발 공사
2	전	대관령면 횡계리 364-10	24,186	6,100,000	2030		
3	전	대관령면 횡계리 344-115	2,135	433,000	2030		
4	대	대관령면 횡계리 371-36	130	47,000	2030		
<b>소계 1건, 1필지</b>			<b>1,853</b>	<b>632,855</b>			
1	전	대관령면 횡계리 279-70	1,853	632,855	2025	군유 일반재산 교환	(주) 중앙알 앤디
<b>건물 취득 합계 [3건, 16동]</b>			<b>2,701.45</b>	<b>13,446,000</b>			
1	임	평창읍 여만리 산46	414.1	1,946,000	2026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	평창군
2	창고 용지	대관령면 용산리 1-106	560	1,500,000	2025	대관령면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차고지 신축	평창군
3	학교 용지	용평면 용전리 71-2	1,727.35	10,000,000	2026	누구나농장 농업체협복합단 지 조성	평창군
<b>토지 처분 합계 [1건, 5필지]</b>			<b>1,959</b>	<b>633,629</b>			
1	전	대관령면 횡계리 279-114	745	255,535	2025	군유 일반재산 교환	평창군
2	전	대관령면 횡계리 279-115	97	33,271	2025		
3	전	대관령면 횡계리 279-116	415	142,345	2025		
4	전	대관령면 횡계리 279-117	545	186,935	2025		
5	도로	대관령면 횡계리 279-20	157	15,543	2025		